

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2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11월 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년 11월 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04년 11월 9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,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하게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함(안 제4조)
-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(안 제5조제1항)
-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(안 제5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 공제등에의 가입)에 시장, 군수는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시장이 김포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또는 그 대직자가 당해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사전에 계약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변상하게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등록 업무담당자 또는 그 대직자의 심리적, 정신적, 재정적 근무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정시 인감업무담당자와 함께 주민등록 업무담당자의 보험·공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법률에 근거한 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